

학교법인 숙명학원

2021학년도 5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 인	재적이사	7 인
감사정수	2 인	재적감사	2 인

1.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1년 12월 8일)

2. 장 소 : 원격영상회의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6인) : 이승한, 강동세, 윤영각, 윤은기, 이제호, 장윤금

- 감사(1인) : 이상록

○ 불참 임원

- 이사(1인) : 송영숙

- 감사(1인) : 백창현

○ 참석 직원 : 법인사무국장 황영식

4. 안 건

정관변경 안

5. 회의 내용

가. 개회선언

의장은 금일 회의 소집에 대한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말하고 개회선언한 후 전회 회의록(2021. 11. 18.) 낭독을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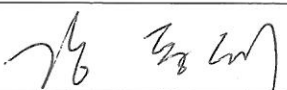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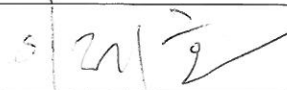
법인사무국장은 전회 회의록 전문을 낭독하다.

의장은 전회 회의록에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전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다.

나. 심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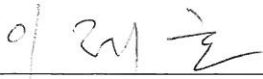
<제 1 호 안건> 정관변경 안

의장은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장윤금 총장은 정관변경 안을 첨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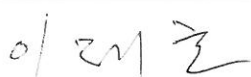
<간서명>			
-------	---	--	---

정관변경 안

현 행	개 정 안	주요골자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9조(임용) ① (생략) ② 대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약정: 연구실적·산학협력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9조(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라. 삭제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약정: 연구실적·산학협력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 관 내 용 을 적용하는 교원은 정년과정전 임교원으로 한정하고자 함. - 다만 비정년 과정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포함)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임용을 포함한 주요 인사사항이 적용 · 관리되고 있음.

<간서명>			
-------	---	--	---

현 행	개 정 안	주요골자
제39조의2(비전임 교원의 임용) <u>대학교육기관의 비전임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 <신 설>	제39조의2(비정년전임 및 비전임 교원의 임용) ① <u>대학교육기관의 비정년전임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비정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 ② <u>대학교육기관의 비전임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	- 비정년과 정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포함)의 경우, 별도 인사규정으로 임용을 포함한 주요 인사사항이 적용 · 관리되고 있음을 적시함. - 조명칭 변경 및 기존 내용과 신설되는 내용을 항목으로 정리함.
제73조(총장 직속기구) ①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법무감사실, 대외협력실, 인권센터, 산학협력단, 학생군사교육단 및 교육혁신원을 두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법무감사실장, 대외협력실장 및 인권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⑤~⑥ (생략)	제73조(총장직속기구) ①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법무감사실, 대외협력실, 인권센터, 산학협력단, 학생군사교육단, 교육혁신원 <u>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u>를 두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법무감사실장, 대외협력실장, 인권센터장 <u>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장</u>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⑤~⑥ (생략)	- 총장 직속기구로 디지털휴머니티센터 신설
	부 칙 (개정 2021.12.16.)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	---	--	---

의장은 상기 정관변경 안에 대하여 참석 이사의 의견을 물으니, 이제호 이사가 원안대로 정관 개정할 것을 발의하니 강동세 이사가 동의하고 윤은기 이사가 재청하여 참석이사 전원(6인) 찬성으로 의결하다.

6. 폐회선언

의장은 이사회를 마치고 회의록 간서명자로 강동세 이사, 이제호 이사, 윤영각 이사를 선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1 : 30이 되다.

2021년 12월 16일

위 사실을 확인함.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이 승 한 이 승 한

이 사 강 동 세 강 동 세

이 사 윤 영 각 윤 영 각

이 사 윤 은 기 윤 은 기

이 사 이 제 호 이 제 호

이 사 장 윤 금 장 윤 금

감 사 이 상 록 이 상 록

<간서명>	강 동 세	이 제 호	이 상 록
-------	-------	-------	-------